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2,095,062.1	-	2,095,062.1	100.0	470,534.0	1,583,783.5	40,744.6		
주거 지역	계	542,605.0	-	542,605.0	25.9	437,818.9	104,786.1	-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488,158.0	-	488,158.0	23.3	390,395.5	97,762.5	-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1,999.5	-	201,999.5	9.6	170,016.8	31,982.7	-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6,158.5	-	286,158.5	13.7	220,378.7	65,779.8	-
	준주거지역	54,447.0	-	54,447.0	2.6	47,423.4	7,023.6	-	
공업 지역	계	1,079,411.3	-	1,079,411.3	51.5	3,106.7	1,037,746.7	38,557.9	
	일반공업지역	921,571.2	-	921,571.2	44.0	-	883,013.3	38,557.9	
	준공업지역	157,840.1	-	157,840.1	7.5	3,106.7	154,733.4	-	
녹지 지역	계	473,045.8	-	473,045.8	22.6	29,608.4	441,250.7	2,186.7	
	자연녹지지역	473,045.8	-	473,045.8	22.6	29,608.4	441,250.7	2,1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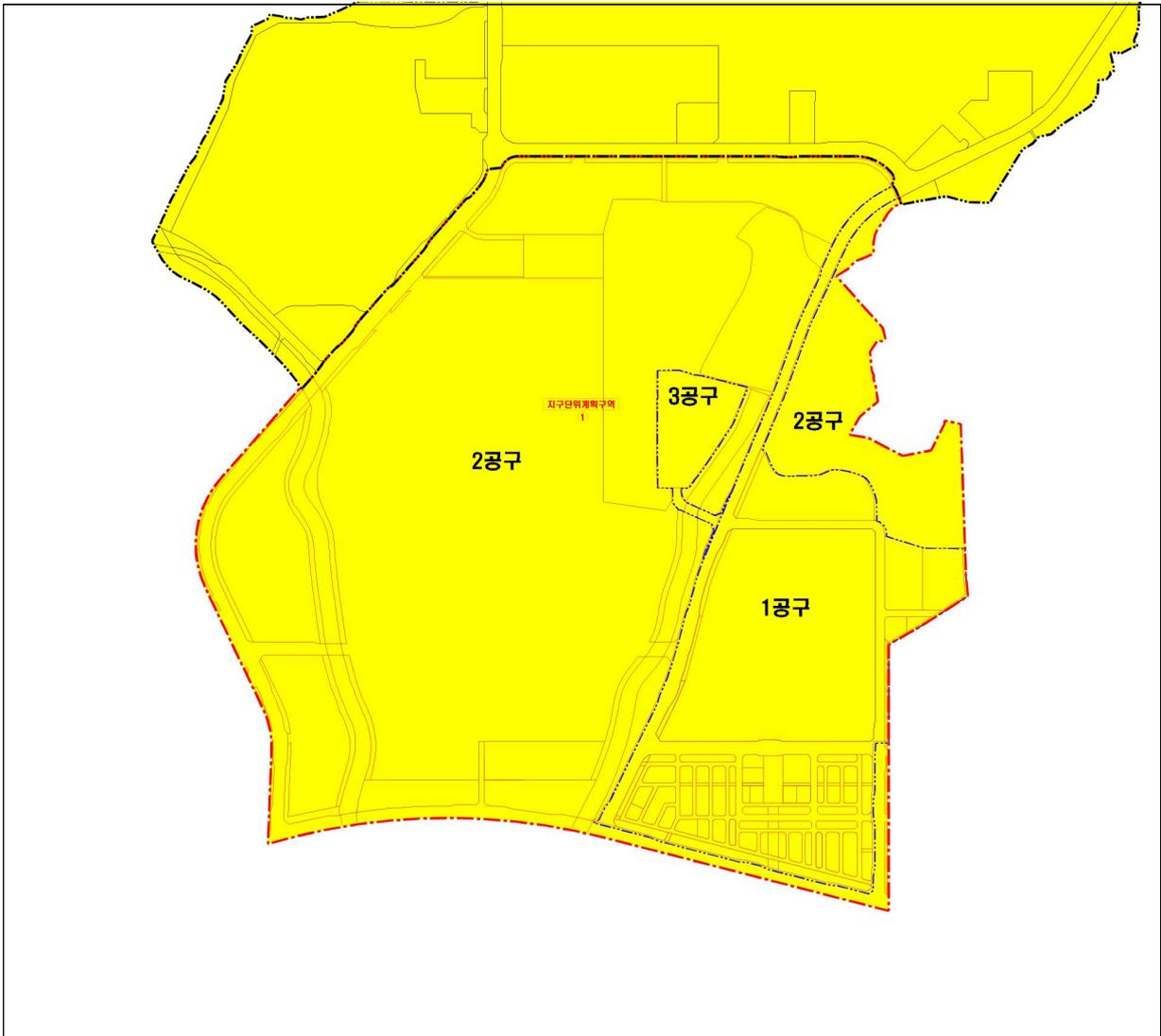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3공구
1	아산 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아산시 당정면 명암리, 용두리 일원	2,095,062.1	-	2,095,062.1	470,534.0	1,583,783.5	40,744.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가.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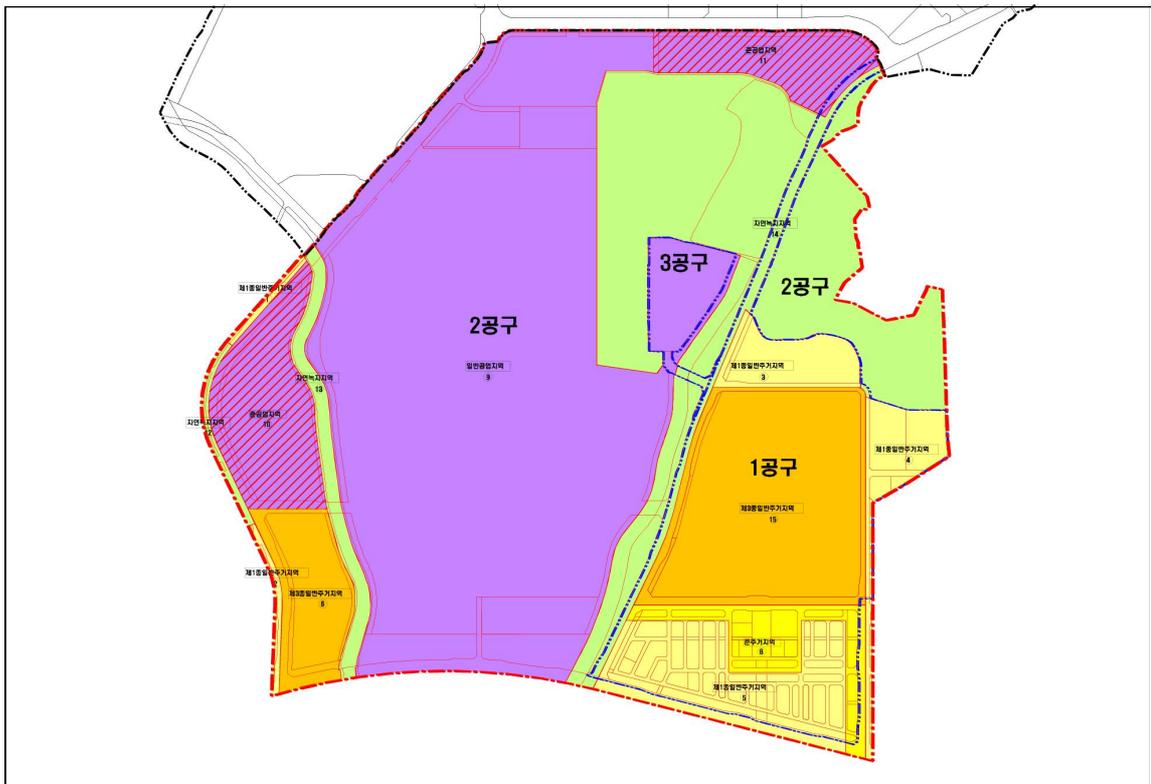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

구 분	면 적(㎡)			구성비 (%)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2,095,062.1	-	2,095,062.1	100.0	470,534.0	1,583,783.5	40,744.6			
주거 지역	계	542,605.0	-	542,605.0	25.9	437,818.9	104,786.1	-		
	소 계	488,158.0	-	488,158.0	23.3	390,395.5	97,762.5	-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1,999.5	-	201,999.5	9.6	170,016.8	31,982.7	-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6,158.5	-	286,158.5	13.7	220,378.7	65,779.8	-	
		준주거지역	54,447.0	-	54,447.0	2.6	47,423.4	7,023.6	-	
공업 지역	계	1,079,411.3	-	1,079,411.3	51.5	3,106.7	1,037,746.7	38,557.9		
	일반공업지역	921,571.2	-	921,571.2	44.0	-	883,013.3	38,557.9		
	준공업지역	157,840.1	-	157,840.1	7.5	3,106.7	154,733.4	-		
녹지 지역	계	473,045.8	-	473,045.8	22.6	29,608.4	441,250.7	2,186.7		
	자연녹지지역	473,045.8	-	473,045.8	22.6	29,608.4	441,250.7	2,186.7		

주 :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은 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용도지역도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42	43	11,086	11,223	220,294.6	223,344.0	6	6	1,502	1,502	23,847.0	23,847.0	30	30	4,110	4,110	48,862.0	48,862.0	6	7	5,474	5,611	131,736.0	133,380.0
합 계	42	43	11,086	11,223	204,445.0	206,089.0	6	6	1,502	1,502	23,847.0	23,847.0	30	30	4,110	4,110	48,862.0	48,862.0	6	7	5,474	5,611	131,736.0	133,380.0
광로	1	1	1,414	1,414	30,080.0	30,080.0	-	-	-	-	-	-	-	-	-	-	-	-	1	1	1,414	1,414	30,080.0	30,080.0
대로	6	6	4,467	4,467	115,433.0	115,433.0	-	-	-	-	-	-	2	2	556	556	15,565.0	15,565.0	4	4	3,911	3,911	99,868.0	99,868.0
중로	6	7	1,791	1,928	30,510.0	32,154.0	2	2	947	947	18,297.0	18,297.0	3	3	695	695	10,425.0	10,425.0	1	2	149	286	1,788.0	3,432.0
소로	29	29	3,414	3,414	28,422.0	28,422.0	4	4	555	555	5,550.0	5,550.0	25	25	2,859	2,859	22,872.0	22,872.0	-	-	-	-	-	-
가각 및 가감속차선, 버스정차장 등	-	-	-	-	15,849.6	17,255.0	-	-	-	-	-	-	-	-	-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	45 (22.5)	주간선 도로	1,414	용두 541-5	명암 986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은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2 일반산업단지 내 도로내역임 •1호하천과 일부 구간(L=34m) 중 복결정 •2호하천과 일부 구간(L=37m) 중 복결정 •자전거전용도로 포함 •2공구
기정	대로	2	1	33	집산도로	54	명암 659-6	명암 755-13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호하천과 일부 구간(L=39m) 중 복결정 •2공구
기정	대로	2	2	30	집산도로	502	대로 3-3	대로 3-4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공구

구분	등급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6	보조간선 도로	1,752	광로 3-1	명암 1247-1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호하천과 일부 구간(L=36m) 중복결정 •2공구
변경	대로	3	1	26	보조간선 도로	1,752	광로 3-1	명암 1247-1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호하천과 일부 구간(L=36m) 중복결정 •기감속차로 일부 변경 •2공구
기정	대로	3	2	26	집산도로	202	대로 3-1	용두 505-6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호하천과 일부 구간(L=34m) 중복결정 •2공구
기정	대로	3	3	26	보조간선 도로	1,612	광로 3-1	명암 14-4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자전거전용 도로 포함 •1공구
기정	대로	3	4	26	집산도로	345	광로 3-1	중로 1-1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2공구
변경	대로	3	4	26	집산도로	345	광로 3-1	중로 1-1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2공구 •기감 일부변경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817	대로 2-2	대로 3-3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2공구
변경	중로	1	1	20	집산도로	817	대로 2-2	대로 3-3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2공구 •기감 일부변경
기정	중로	1	2	20	집산도로	130	대로 3-3	명암 1288	일반 도로		총고2012-347호 (12.10.12)	•2호하천과 일부 구간(L=31m) 중복결정 •3공구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442	대로 2-2	대로 3-4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공구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35	대로 2-2	중로 2-2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공구
기정	중로	2	4	15	국지도로	118	중로 1-1	갈산547-1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공구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149	광로 3-1	용두 산47-1	일반 도로		총고2008-100호 (08.4.18)	•주차장 진입 도로 •2공구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145	광로 3-1	용두 산47-1	일반 도로		총고2008-100호 (08.4.18)	•주차장 진입 도로 •2공구
신설	중로	3	2	12	국지도로	141	대로3-1	용두 329-14	일반 도로			•2공구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01	중로 2-2	소로 2-2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90	중로 2-3	소로 1-3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35	대로 2-2	중로 2-2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공구

구분	등급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29	중로 2-2	소로 2-2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6	대로 2-2	소로 1-1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709	소로 1-1	대로 3-4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45	중로 2-2	소로 1-1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81	소로 2-2	소로 2-3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89	소로 2-4	소로 2-2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76	소로 2-3	소로 2-2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26	소로 2-3	소로 2-2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12	소로 1-1	소로 2-3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12	소로 1-1	소로 2-3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12	소로 1-1	소로 2-3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46	소로 2-3	소로 2-2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56	소로 2-3	소로 2-2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58	중로 2-2	소로 2-2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152	중로 2-2	중로 2-3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90	중로 2-3	소로 1-3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83	소로 1-2	소로 2-15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83	소로 1-2	소로 2-15	일반 도로		총고2005 -100호 (05.5.28)	•1공구

구분	등급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18	중로 2-2	소로 2-19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264	소로 1-4	소로 2-13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45	소로 2-19	소로 2-2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62	소로 2-19	소로 2-2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71	소로 2-19	소로 2-2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23	8	국지도로	77	소로 2-19	소로 2-2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24	8	국지도로	83	소로 2-19	소로 2-2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공구
기정	소로	2	25	8	국지도로	93	소로 2-19	소로 2-2	일반 도로		총고2005-100호 (05.5.28)	•1공구

※ () 부분은 아산 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내 도로의 내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	대로 3-1	가감속차로 변경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가감속차로 변경
대로 3-4	대로 3-4	가각 일부변경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가각 일부변경
중로 1-1	중로 1-1	가각 일부변경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가각 일부변경
중로 3-1	중로 3-1	연장 변경(L=149m→145m)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연장 변경
-	중로 1-3	도로 신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25,912.9	-	25,912.9	-	
1공구 소계			3개소	2,667.9	증) 1,000.1	3,668.0	-	
기정	2	주차장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41-2 일원	1,074.1	-	1,074.1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3	주차장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28-9 일원	1,593.8	-	1,593.8	총고2005-100호 (05.5.28)	
신설	4	주차장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55 일원	-	증) 1,000.1	1,000.1		
2공구 소계			1개소	23,245.0	감) 1,000.1	22,244.9	-	
변경	6	주차장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704-3 일원	23,245.0	감) 1,000.1	22,244.9	총고2008-100호 (08.4.18)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주차장	신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신설
6	주차장	면적변경(23,245.0㎡→22,244.9㎡)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338,905.6	-	338,905.6	-	
1공구 소계				2개소	6,305.2	-	6,305.2	-	
기정	3	3호공원	어린이공원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28-2 일원	4,781.6	-	4,781.6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4	4호공원	어린이공원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41-1 일원	1,523.6	-	1,523.6	총고2005-100호 (05.5.28)	
2공구 소계				2개소	332,600.4	-	332,600.4	-	
기정	1	1호공원	근린공원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77-1 일원	214,093.5	-	214,093.5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2	2호공원	근린공원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45-1 일원	118,506.9	-	118,506.9	총고2005-100호 (05.5.28)	

○ 1호공원 조성계획 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내 용	시 설 면 적 (㎡)		비 고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총 계		214,093.5		
도로 및 광장	도 로 • 광 장	11,941.2		
조 경 시 설	피크닉장 외 1종	1,991.9		
휴 양 시 설	전망쉼터	201.1		
교 양 시 설	야외공연장	395.5		
유 희 시 설	어린이놀이터	526.0		
운 동 시 설	농구장 외3종	1,426.5		
편 익 시 설	화장실	153.4		
녹지 및 기타 (유수지)	녹지	197,457.9 (58,494.1)		녹지율:92.2%

○ 세부시설 조서(변경없음)

■ 도로조서

구분	등급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3	진입도로	830	진입광장	소로3-2				
기정	소로	3	2	5	진입도로	162	중앙광장	진입도로				
기정	소로	3	3	3	연결로	14	진입광장	소로3-1				
기정	소로	3	4	2	연결로	53	휴게광장1	소로3-4				
기정	소로	3	5	2	연결로	302	중앙광장	소로3-1				
기정	소로	3	6	2	연결로	12	농구장	소로3-9				
기정	소로	3	7	2	연결로	26	농구장	소로3-9				
기정	소로	3	8	2	연결로	14	소로3-1	소로3-9				
기정	소로	3	9	2	산책로	383	소로3-1	전망쉼터				
기정	소로	3	10	2	산책로	294	휴게광장1	소로3-4				
기정	소로	3	11	2	산책로	312	소로3-9	전망쉼터				
기정	소로	3	12	3	산책로	135	진입도로	전망쉼터				
신설	소로	3	13	2	연결로	35	휴게광장2	소로3-14				
신설	소로	3	14	2	연결로	76	진입도로	진입도로				
신설	소로	3	15	2	연결로	24	휴게광장2	소로3-13				
신설	소로	3	16	2	연결로	29	진입도로	휴게광장2				
신설	소로	3	17	3	연결로	96	진입도로	진입도로				
신설	소로	3	18	2	연결로	16	소로3-4	소로3-19				
신설	소로	3	19	2	연결로	19	진입도로	소로3-9				

■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기 호	위 치	부지면적(㎡)	규모 수량	시설 면적	비고
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77-1 일원	214,093.5			
도로 및 광장	소계			11,941.2			
	도로(소계)			6,638.0			
	진입도로1	101		2,490.0			
	진입도로2	102		810.0			
	연결로1	103		42.0			
	연결로2	104		106.0			
	연결로3	105		604.0			
	연결로4	106		24.0			
	연결로5	107		52.0			

	연결로6	108		28.0			
	산책로1	109		766.0			
	산책로2	110		588.0			
	산책로3	111		624.0			
	산책로4	112		270.0			
	연결로7	113		70.0			
	연결로8	114		152.0			
	연결로9	115		48.0			
	연결로10	116		58.0			
	연결로11	117		288.0			
	연결로12	118		32.0			
	연결로13	119		38.0			
	광장(소계)			4,851.2			
	진입광장	가		851.9			
	휴게광장1	나		831.0			
	중앙광장	다		2,508.5			
	휴게광장2	라		659.8			
교양 시설	소계			395.5			
	야외공연장	A		395.5			
조경 시설	소계			1,991.9			
	피크닉장	B		1,026.7			
	주제정원	C		965.2			
유희 시설	소계			526.0			
	어린이놀이터	D		526.0			
운동 시설	소계			1,426.5			
	농구장	E		764.9			
	족구장	F		431.1			
	체력단련시설1	G		152.3			
	체력단련시설2	H		78.2			
휴양 시설	소계			201.1			
	전망쉼터	I		201.1			
편익 시설	소계			153.4			
	화장실1	J		76.7			
	화장실2	K		76.7			
녹지				197,457.9			녹지율:92.2%

○ 2호공원 조성계획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118,506.9		
도로 및 광장	도로·광장	2,501.3		
휴양시설	전망쉼터 외 1종	179.1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1,213.8		
편익시설	주차장	1,335.9		
녹지 및 기타	녹지	113,276.8		녹지율 : 95.6%

○ 세부시설조사(변경없음)

■ 도로조사

구분	등급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2	산책로	439	진입광장	체력단련시설1				
기정	소로	3	2	2	산책로	239	소로3-1	체력단련시설2				
기정	소로	3	3	2	산책로	164	소로3-4	체력단련시설2				
기정	소로	3	4	2.5	연결로	23	광장	소로3-3				
기정	소로	3	5	4	진입로	12	진입도로	광장				

■ 시설조사

구분	시설명	기호	위치	부지면적(㎡)	규모수량	시설면적	비고
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45-1 일원	118,506.9			
도로 및 광장	소계			2,501.3			
	도로(소계)			1,811.7			
	산책로1	101		887.1			
	산책로2	102		480.7			
	산책로3	103		331.3			
	연결로1	104		63.6			
	진입로1	105		49.0			
	광장(소계)			689.6			
	진입광장	가		215.5			
광장	나		474.1				
휴양 시설	소계			179.1			
	쉼터A	A		99.9			
	쉼터B	B		79.2			
운동 시설	소계			1,213.8			
	체력단련시설1	C		593.6			
	체력단련시설2	D		620.2			
편익 시설	소계			1,335.9			
	주차장	E		1,335.9			
녹지				113,276.8			

○ 3호공원 조성계획 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내 용	시 설 면 적 (㎡)		비 고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총 계		4,781.6		
도로 및 광장	도 로 · 광 장	1,913.0		
조경 시설	분수대	78.0		
유 희 시 설	어린이놀이터	611.0		
휴 양 시 설	휴게쉼터	38.0		
녹지 및 기타	녹 지	2,141.6		녹지율 : 44.8%

○ 세부시설조서(변경없음)

■ 도로조서

구분	등급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2.0	산책로	40	광장2	광장2				
기정	소로	3	2	4.0	산책로	7	소로3-1	부지외곽도로				
기정	소로	3	3	2.0	산책로	49	소로3-2	광장3				
기정	소로	3	4	1.5	산책로	12	광장1	소로3-5				
기정	소로	3	5	1.5	산책로	65	부지외곽도로	부지외곽도로				
기정	소로	3	6	1.5	산책로	6	소로3-5	광장2				
기정	소로	3	7	3.0	산책로	18	부지외곽도로	광장3				
기정	소로	3	8	6.0	산책로	5	광장3	진입도로				
기정	소로	3	9	3.0	산책로	18	부지외곽도로	광장3				

■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기 호	위 치	부지면적(㎡)	규모 수량	시설 면적	비고
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30-2 일원	4,781.6			
도로 및 광장	소계			1,913.0			
	도로(소계)			469.0			
	산책로1	101		80.0			
	산책로2	102		28.0			
	산책로3	103		98.0			
	산책로4	104		18.0			
	산책로5	105		98.0			
	산책로6	106		9.0			
	산책로7	107		54.0			
	산책로8	108		30.0			
	산책로9	109		54.0			
	광장(소계)			1,444.0			
	광장1	1		298.0			
	광장2	2		761.0			
	광장3	3		385.0			
조경 시설	소계			78.0			
	파고라A	A		-	2동		
	분수대	4		78.0			
유희 시설	소계			611.0			
	어린이놀이터1	5		394.0			
	어린이놀이터2	6		217.0			
휴양 시설	휴게쉼터(소계)			38.0			
	휴게쉼터1	7		19.0			
	휴게쉼터2	8		19.0			
녹지				2,141.6			녹지율 : 44.8%

○ 4호공원 조성계획 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내 용	시 설 면 적 (㎡)		비 고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총 계		1,523.6		
도로 및 광장	도 로 · 광 장	334.0		
유 희 시 설	어린이놀이터 외 2종	479.0		
휴 양 시 설	휴게쉼터 외3종	121.6		
녹지 및 기타	녹 지	589.0		녹지율 : 38.7%

○ 세부시설조서(변경없음)

■ 도로조서

구분	등급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4.0	진입로	11	부지외곽도로	어린이놀이터				
기정	소로	3	2	5.0	진입로	6	진입도로	소로3-3				
기정	소로	3	3	2.0	연결로	66	소로3-1	진입도로				

■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기 호	위 치	부지면적(㎡)	규모 수량	시설 면적	비고
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51-9 일원	1,523.6			
도로 및 광장	소계			334.0			
	도로(소계)			206.0			
	진입로1	101		44.0			
	진입로2	102		30.0			
	연결로1	103		132.0			
	광장(소계)			128.0			
	광장1	1		128.0			
유희 시설	소계			479.0			
	어린이놀이터	2		479.0			
	조합놀이대	A		-	1개소		
	시 소	B					
	흔들놀이	C		-	1개소		
	그 네	D		-	1개소		
	수목보호울	E		-	1개소		
휴양 시설	소계			121.6			
	휴게쉼터	3		121.6			
	사각파고라	F		-	3개소		
	앉음벽	G		-	2개소		
	휴지통	H		-	1개소		
녹지				589.0			녹지율 : 38.7%

나)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1개소	51,616.3	증) 322.0	51,938.3	-	
1공구 소계				8개소	16,344.3	-	16,344.3	-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57 일원	1,614.2	-	1,614.2	총고2005 -100호 (05.5.28)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58 일원	1,842.3	-	1,842.3	총고2005 -100호 (05.5.28)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60 일원	1,174.6	-	1,174.6	총고2005 -100호 (05.5.28)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36-1 일원	145.8	-	145.8	총고2005 -100호 (05.5.28)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36-3 일원	1,246.8	-	1,246.8	총고2005 -100호 (05.5.28)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54-1 일원	2,089.7	-	2,089.7	총고2005 -100호 (05.5.28)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54-3 일원	4,351.4	-	4,351.4	총고2005 -100호 (05.5.28)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54-5 일원	3,879.5	-	3,879.5	총고2005 -100호 (05.5.28)	
2공구 소계				13개소	35,272.0	증) 322.0	35,594.0	-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1254-1 일원	3,227.0	감) 72.0	3,155.0	총고2005 -100호 (05.5.28)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1262-1 일원	2,079.0	감) 760.0	1,319.0	총고2005 -100호 (05.5.28)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64-4 일원	6,166.0	-	6,166.0	총고2005 -100호 (05.5.28)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94-1 일원	1,537.0	-	1,537.0	총고2005 -100호 (05.5.28)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00-3 일원	3,571.0	-	3,571.0	총고2005 -100호 (05.5.28)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41-1 일원	6,851.0	-	6,851.0	총고2005 -100호 (05.5.28)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1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305 일원	1,894.0	감) 312.0	1,582.0	총고2012-107호 (11.4.21)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530-2 일원	1,733.0	-	1,733.0	총고2012-107호 (11.4.21)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536-4 일원	1,124.0	-	1,124.0	총고2012-107호 (11.4.21)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559-11 일원	3,740.0	-	3,740.0	총고2012-107호 (11.4.21)	
신설	25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1208-1 일원	-	증) 366.0	366.0		
신설	26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341 일원	-	증) 1,100.0	1,100.0		
기정	86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55-3 일원	3,350.0 (7,940.0)	-	3,350.0	아고2011-104호 (11.5.16)	

주 : ()의 면적은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아산시고시 제2011-104호, 2011.5.16.)에 따른 86호 완충녹지 고시 면적으로 3,350.0m²가 단지내 일부 포함됨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완충녹지	면적 변경 (3,227m ² →3,155m ²)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완충녹지 면적 변경
3	완충녹지	위치 및 면적 변경 (2,079m ² →1,319m ²)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완충녹지 위치 및 면적 변경
21	완충녹지	면적 변경 (1,894m ² →1,582m ²)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완충녹지 면적 변경
25	완충녹지	신설(366m ²)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완충녹지 신설
26	완충녹지	신설(1,100m ²)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완충녹지 신설

다)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3개소	55,017.2	감) 117.0	54,900.2	-	
1공구 소계			21개소	7,394.4	감) 31.0	7,363.4	-	
기정	9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59 일원	1,092.7	-	1,092.7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10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36-2 일원	111.0	-	111.0	총고2005-100호 (05.5.28)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36-4 일원	81.7	-	81.7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12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54-2 일원	163.1	-	163.1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13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34-4 일원	174.1	-	174.1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14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33-4 일원	173.9	-	173.9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15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32-4 일원	174.0	-	174.0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16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31-3 일원	86.9	-	86.9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17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28-8 일원	280.8	-	280.8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18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28-4 일원	363.3	-	363.3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19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29-3 일원	438.8	-	438.8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20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44-5 일원	436.6	-	436.6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21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52-2 일원	1,340.3	-	1,340.3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22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54-4 일원	516.1	-	516.1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23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26-3 일원	86.8	-	86.8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24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25-4 일원	174.1	-	174.1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25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24-4 일원	180.0	-	180.0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26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22-4 일원	149.6	-	149.6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27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46-4 일원	149.6	-	149.6	총고2005-100호 (05.5.28)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3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56 일원	612.0 (694.0)	감) 31.0	581.0	총고2012-347호 (12.10.12)	
기정	38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56 일원	609	-	609.0	총고2015-72호 (15.03.20)	
2공구 소계			12개소	47,622.8	감) 86.0	47,536.8	-	
기정	2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13-2 일원	6,462.0	-	6,462.0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3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398 일원	8,551.0	-	8,551.0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4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38-1 일원	4,145.0	-	4,145.0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6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653 일원	3,846.2	-	3,846.2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7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633-2 일원	6,536.5	-	6,536.5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29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535-5 일원	989.0	-	989.0	총고2008-105호 (08.4.25)	
기정	30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59-11 일원	3,457.0	-	3,457.0	총고2008-105호 (08.4.25)	
기정	31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683-2 일원	3,632.0	-	3,632.0	총고2008-105호 (08.4.25)	
변경	33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56 일원	82.0 (694.0)	감) 82.0	-	총고2012-347호 (12.10.12)	
변경	34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31 일원	526.0	감) 4.0	522.0	총고2012-347호 (12.10.12)	
기정	35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68-2 일원	3,681.5	-	3,681.5	총고2012-347호 (12.10.12)	
기정	36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637-6 일원	4,906.6	-	4,906.6	총고2012-347호 (12.10.12)	
기정	37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22 일원	808.0	-	808.0	총고2012-347호 (12.10.12)	

주1 : 33호 공공공지 ()의 면적은 1, 2공구에 분할된 공공공지 합산 면적임.

3) 유통공급시설(신설)

가) 전기공급설비(신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증) 15,416.0	15,416.0		2공구
신설	1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342 일원	-	증) 15,416.0	15,416.0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신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전기공급설비(변전시설) 신설

나) 가스공급설비(신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증) 17,999.0	17,999.0		2공구
신설	1	가스공급설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용두 331 일원	-	증) 17,999.0	17,999.0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가스공급설비	신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가스공급설비 신설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82,166.5	-	82,166.5	-	
1공구 소계		3개소			43,642.6	-	43,642.6	-	
기정	2	학교	중학교	명암 852 일원	13,096.6	-	13,096.6	총고2005-100호 (05.5.28)	
기정	3	학교	고등학교	명암 851 일원	30,546.0	-	30,546.0	총고2005-100호 (05.5.28)	외국어 고등학교
3공구 소계		1개소			37,370.3	-	37,370.3	-	
기정	4	학교	고등학교	명암 1287 일원	37,370.3	-	37,370.3	총고2012-347호 (12.10.12)	자사고

5)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하천(변경없음)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 (m)	폭 원 (m)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변경	합계	2개소			2,126	-	72,397.3	-		2공구, 3공구	
기정	1	용두천	지방 하천	명암리 1267	용두리 645-1	용두리 506-1	1,041	34	35,424.4	총고2005-100호 (05.5.28)	2공구내 광로3-1, 대로3-1, 대로3-2호선과 (L=105m) 중복
기정	2	명암천	소하천	명암리 755	명암리 637	명암리 735	1,085	33~42	36,972.9	총고2005-100호 (05.5.28)	2공구내 광로3-1, 대로2-1호선과 3공구내 중로1-2호선의 일부구간(L=107m) 중복

나)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100,423.7	-	100,423.7	-	2공구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명암리 585 일원	58,494.1	-	58,494.1	총고2008-105호 (08.4.25)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명암 884 일원	9,044.8	-	9,044.8	총고2011-107호 (11.4.21)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명암 729 일원	16,549.0	-	16,549.0	총고2011-107호 (11.4.21)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용두 531-5일원	16,335.8	-	16,335.8	총고2011-107호 (11.4.21)	

6)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53,867.0	감) 791.0	53,076.0	-	2공구
변경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용두리 329-12일원	53,867.0	감) 791.0	53,076.0	총고2005-100호 (05.5.28)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수질오염 방지시설	면적변경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면적 변경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 변경사유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면적 감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A1	A1	708,852.3	673,974.0	A1	708,852.3	감) 34,878.3	673,974.0	2공구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B1	B1	53,410.7	53,410.7	B1	53,410.7	-	53,410.7	2공구
B2	B2	670.0	670.0	B2	670.0	-	670.0	1공구
B3	B3	12,262.4	12,262.4	B3	12,262.4	-	12,262.4	1공구

다)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변경없음)

○ 생활대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C1	C1	981.1	C1-1	345.1	-	345.1	•1공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8조에 따라 분할·합병가능
			C1-2	318.1	-	318.1	
			C1-3	317.9	-	317.9	
C2	C2	2,015.5	C2-1	397.9	-	397.9	
			C2-2	397.9	-	397.9	
			C2-3	397.9	-	397.9	
			C2-4	398.9	-	398.9	
			C2-5	422.9	-	422.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C3	C3	975.6	C3-1	525.8	-	525.8	•1공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8조에 따라 분할·합병가능
			C3-2	449.8	-	449.8	
C4	C4	1,214.9	C4-1	399.0	-	399.0	
			C4-2	397.9	-	397.9	
			C4-3	418.0	-	418.0	
C5	C5	1,428.2	C5-1	475.8	-	475.8	
			C5-2	475.7	-	475.7	
			C5-3	476.7	-	476.7	
C6	C6	1,569.1	C6-1	528.3	-	528.3	
			C6-2	512.4	-	512.4	
			C6-3	528.4	-	528.4	
C7	C7	1,429.6	C7-1	504.9	-	504.9	
			C7-2	447.9	-	447.9	
			C7-3	476.8	-	476.8	
C8	C8	1,574.7	C8-1	527.5	-	527.5	
			C8-2	527.6	-	527.6	
			C8-3	519.6	-	519.6	
C9	C9	1,489.1	C9-1	445.2	-	445.2	
			C9-2	522.0	-	522.0	
			C9-3	521.9	-	521.9	

○ 이주자택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D1	D1	2,534.4	D1-1	244.6	-	244.6	•1공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8조에 따라 분할·합병가능
			D1-2	244.6	-	244.6	
			D1-3	244.6	-	244.6	
			D1-4	244.6	-	244.6	
			D1-5	244.6	-	244.6	
			D1-6	262.4	-	262.4	
			D1-7	261.5	-	261.5	
			D1-8	262.5	-	262.5	
			D1-9	262.5	-	262.5	
			D1-10	262.5	-	262.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D2	D2	1,523.8	D2-1	244.6	-	244.6	•1공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8조에 따라 분할·합병가능
			D2-2	243.7	-	243.7	
			D2-3	244.7	-	244.7	
			D2-4	263.6	-	263.6	
			D2-5	263.6	-	263.6	
			D2-6	263.6	-	263.6	
D3	D3	3,309.0	D3-1	319.6	-	319.6	
			D3-2	279.7	-	279.7	
			D3-3	261.7	-	261.7	
			D3-4	262.7	-	262.7	
			D3-5	249.7	-	249.7	
			D3-6	249.7	-	249.7	
			D3-7	249.7	-	249.7	
			D3-8	320.5	-	320.5	
			D3-9	319.6	-	319.6	
			D3-10	264.7	-	264.7	
			D3-11	265.7	-	265.7	
			D3-12	265.7	-	265.7	
D4	D4	1,379.7	D4-1	327.9	-	327.9	
			D4-2	257.9	-	257.9	
			D4-3	270.0	-	270.0	
			D4-4	263.9	-	263.9	
			D4-5	260.0	-	260.0	
D5	D5	1,083.3	D5-1	270.9	-	270.9	
			D5-2	270.8	-	270.8	
			D5-3	270.9	-	270.9	
			D5-4	270.7	-	270.7	
D6	D6	1,082.4	D6-1	270.6	-	270.6	
			D6-2	270.6	-	270.6	
			D6-3	270.6	-	270.6	
			D6-4	270.6	-	270.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D7	D7	1,083.0	D7-1	270.8	-	270.8	•1공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8조에 따라 분할·합병가능
			D7-2	270.7	-	270.7	
			D7-3	270.8	-	270.8	
			D7-4	270.7	-	270.7	
D8	D8	535.0	D8-1	264.5	-	264.5	
			D8-2	270.5	-	270.5	
D9	D9	1,964.6	D9-1	245.2	-	245.2	
			D9-2	245.2	-	245.2	
			D9-3	245.7	-	245.7	
			D9-4	246.2	-	246.2	
			D9-5	245.2	-	245.2	
			D9-6	245.2	-	245.2	
			D9-7	245.6	-	245.6	
			D9-8	246.3	-	246.3	
D10	D10	1,962.1	D10-1	244.9	-	244.9	
			D10-2	245.0	-	245.0	
			D10-3	245.1	-	245.1	
			D10-4	245.9	-	245.9	
			D10-5	244.8	-	244.8	
			D10-6	244.9	-	244.9	
			D10-7	245.5	-	245.5	
			D10-8	246.0	-	246.0	
D11	D11	1,962.4	D11-1	244.9	-	244.9	
			D11-2	244.9	-	244.9	
			D11-3	245.5	-	245.5	
			D11-4	245.9	-	245.9	
			D11-5	244.9	-	244.9	
			D11-6	244.9	-	244.9	
			D11-7	245.5	-	245.5	
			D11-8	245.9	-	245.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D12	D12	974.2	D12-1	244.8	-	244.8	•1공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8조에 따라 분할·합병가능
			D12-2	244.8	-	244.8	
			D12-3	244.8	-	244.8	
			D12-4	239.8	-	239.8	
D13	D13	1,455.5	D13-1	242.9	-	242.9	
			D13-2	241.9	-	241.9	
			D13-3	242.9	-	242.9	
			D13-4	242.9	-	242.9	
			D13-5	242.0	-	242.0	
			D13-6	242.9	-	242.9	
D14	D14	826.6	D14-1	274.9	-	274.9	
			D14-2	274.9	-	274.9	
			D14-3	276.8	-	276.8	
D15	D15	1,101.3	D15-1	275.4	-	275.4	
			D15-2	275.3	-	275.3	
			D15-3	275.3	-	275.3	
			D15-4	275.3	-	275.3	
D16	D16	1,280.8	D16-1	255.1	-	255.1	
			D16-2	256.4	-	256.4	
			D16-3	256.4	-	256.4	
			D16-4	256.4	-	256.4	
			D16-5	256.5	-	256.5	
D17	D17	1,524.9	D17-1	328.1	-	328.1	
			D17-2	330.2	-	330.2	
			D17-3	288.2	-	288.2	
			D17-4	288.1	-	288.1	
			D17-5	290.3	-	290.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D18	D18	761.4	D18-1	253.8	-	253.8	•1공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8조에 따라 분할·합병가능
			D18-2	253.8	-	253.8	
			D18-3	253.8	-	253.8	
D19	D19	838.2	D19-1	279.4	-	279.4	
			D19-2	279.4	-	279.4	
			D19-3	279.4	-	279.4	
D20	D20	1,903.1	D20-1	308.1	-	308.1	
			D20-2	307.1	-	307.1	
			D20-3	307.1	-	307.1	
			D20-4	245.2	-	245.2	
			D20-5	245.2	-	245.2	
			D20-6	245.2	-	245.2	
			D20-7	245.2	-	245.2	
D21	D21	1,050.7	D21-1	262.9	-	262.9	
			D21-2	262.0	-	262.0	
			D21-3	262.0	-	262.0	
			D21-4	263.8	-	263.8	
D22	D22	534.2	D22-1	267.1	-	267.1	
			D22-2	267.1	-	267.1	
D23	D23	1,083.4	D23-1	273.8	-	273.8	
			D23-2	267.9	-	267.9	
			D23-3	273.9	-	273.9	
			D23-4	267.8	-	267.8	
D24	D24	1,120.9	D24-1	283.7	-	283.7	
			D24-2	276.7	-	276.7	
			D24-3	283.7	-	283.7	
			D24-4	276.8	-	276.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D25	D25	553.3	D25-1	275.2	-	275.2	•1공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8조에 따라 분할·합병가능
			D25-2	278.1	-	278.1	
D26	D26	1,121.8	D26-1	276.0	-	276.0	
			D26-2	284.9	-	284.9	
			D26-3	276.0	-	276.0	
			D26-4	284.9	-	284.9	
D27	D27	1,160.5	D27-1	285.4	-	285.4	
			D27-2	294.8	-	294.8	
			D27-3	285.5	-	285.5	
			D27-4	294.8	-	294.8	
D28	D28	1,534.8	D28-1	256.6	-	256.6	
			D28-2	255.4	-	255.4	
			D28-3	255.4	-	255.4	
			D28-4	255.4	-	255.4	
			D28-5	255.4	-	255.4	
			D28-6	256.6	-	256.6	
D29	D29	1,600.4	D29-1	266.8	-	266.8	
			D29-2	266.7	-	266.7	
			D29-3	266.7	-	266.7	
			D29-4	266.7	-	266.7	
			D29-5	266.7	-	266.7	
			D29-6	266.8	-	266.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D30	D30	1,192.4	D30-1	297.8	-	297.8	•1공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8조에 따라 분할·합병가능
			D30-2	297.9	-	297.9	
			D30-3	297.9	-	297.9	
			D30-4	298.8	-	298.8	
D31	D31	2,656.2	D31-1	260.3	-	260.3	
			D31-2	260.2	-	260.2	
			D31-3	260.2	-	260.2	
			D31-4	259.2	-	259.2	
			D31-5	260.2	-	260.2	
			D31-6	271.2	-	271.2	
			D31-7	271.2	-	271.2	
			D31-8	271.2	-	271.2	
			D31-9	271.2	-	271.2	
			D31-10	271.3	-	271.3	
D32	D32	3,057.5	D32-1	250.1	-	250.1	
			D32-2	249.0	-	249.0	
			D32-3	250.1	-	250.1	
			D32-4	250.1	-	250.1	
			D32-5	250.2	-	250.2	
			D32-6	250.2	-	250.2	
			D32-7	260.2	-	260.2	
			D32-8	259.2	-	259.2	
			D32-9	260.1	-	260.1	
			D32-10	260.1	-	260.1	
			D32-11	258.1	-	258.1	
			D32-12	260.1	-	260.1	

라) 주거 및 기숙사용지(변경없음)

○ 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E1	E1	191,924.0	E1	191,924.0	-	191,924.0	1공구
E2	E2	44,271.0	E2	44,271.0	-	44,271.0	2공구

○ 기숙사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E3	E3	71,195.0	E3	71,195.0	-	71,195.0	2공구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 주차장(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F2	F2	1,074.1	1,074.1	F2	1,074.1	-	1,074.1	1공구
F3	F3	1,593.8	1,593.8	F3	1,593.8	-	1,593.8	
F4	F4	-	1,000.1	F4	-	증) 1,000.1	1,000.1	
F6	F6	23,245.0	22,244.9	F6	23,245.0	감) 1,000.1	22,244.9	2공구

○ 학교(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G2	G2	13,096.6	G2	13,096.6	-	13,096.6	•중학교 •1공구
G3	G3	30,546.0	G3	30,546.0	-	30,546.0	•외국어고등학교 •1공구
G4	G4	1,153.6	G4	1,153.6	-	1,153.6	•유치원 •1공구
G5	G5	37,370.3	G5	37,370.3	-	37,370.3	•고등학교 •3공구

○ 근린공공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위 치	획 지 (m ²)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H1	H1	1,180.6	1,180.6	H1	1,180.6	-	1,180.6	•복지시설 •1공구
H3	H3	1,357.8	1,357.8	H3	1,357.8	-	1,357.8	•소방피출소 •1공구
H4	H4	3,865.1	3,865.1	H4	3,865.1	-	3,865.1	•면사무소(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중대본부, 자율방범대 등 기타공공용도 포함) •1공구
H5	H5	1,180.5	1,180.5	H5	1,180.5	-	1,180.5	•복지시설 •1공구

○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위 치	획 지 (m ²)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I2	I2	2,356.0	2,356.0	I2	2,356.0	-	2,356.0	1공구
I3	I3	1,000.0	1,000.0	I3	1,000.0	-	1,000.0	

○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위 치	획 지 (m ²)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K1	K1	53,867.0	53,076.0	K1	53,867.0	감) 791.0	53,076.0	2공구

○ 통신시설(폐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위 치	획 지 (m ²)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N1	N1	1,000.1	-	N1	1,000.1	감) 1,000.1	-	1공구

○ 유수지(저류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위 치	획 지 (m ²)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O1 ^{주)}	O1 ^{주)}	58,494.1	58,494.1	O1 ^{주)}	58,494.1	-	58,494.1	2공구
O2	O2	9,044.8	9,044.8	O2	9,044.8	-	9,044.8	2공구
O3	O3	16,549.0	16,549.0	O3	16,549.0	-	16,549.0	2공구
O4	O4	16,335.8	16,335.8	O4	16,335.8	-	16,335.8	2공구

주 : 1호 근린공원과 중복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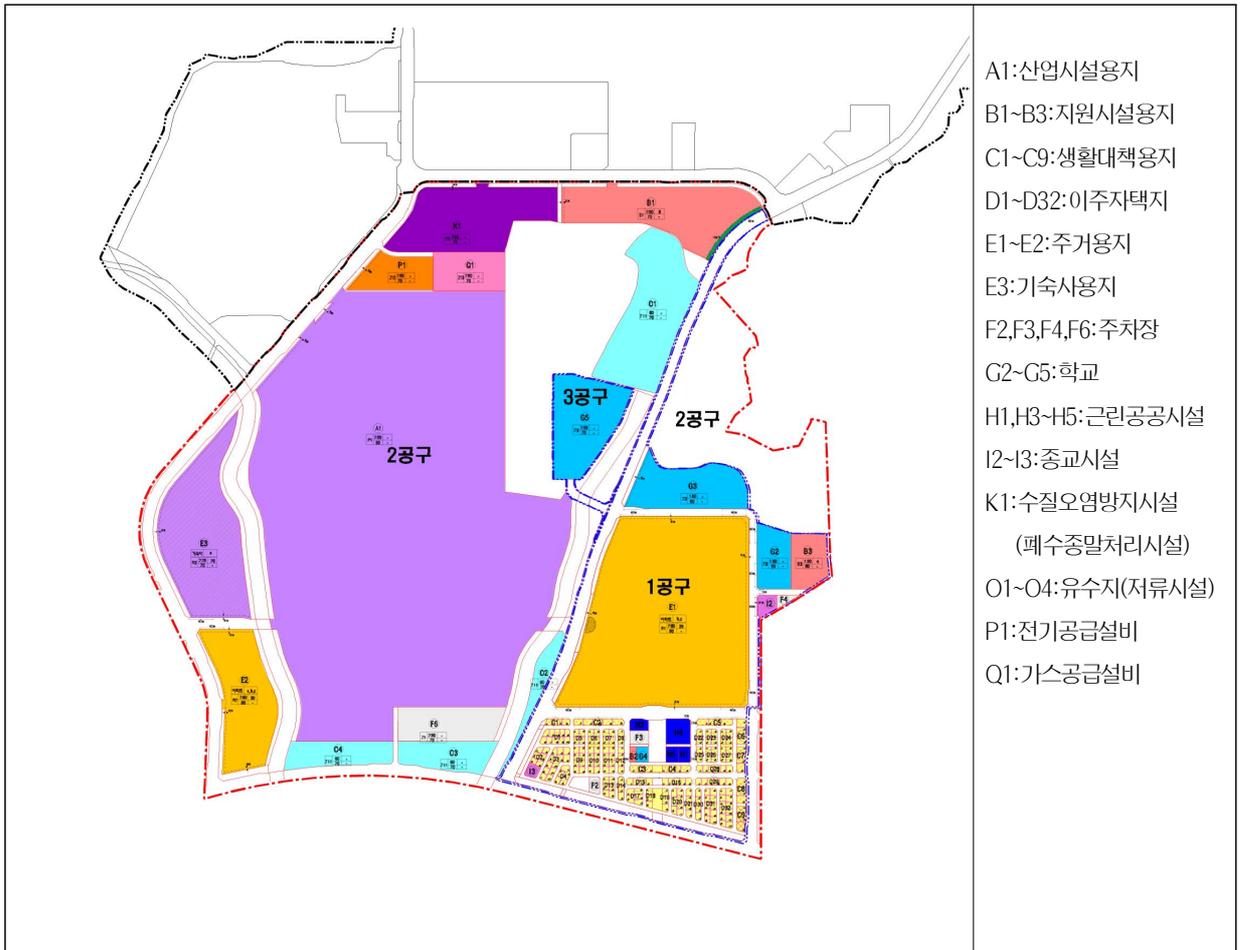
○ 전기공급설비(신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P1	P1	-	17,059.0	P1	-	증 15,416.0	15,416.0	2공구

○ 가스공급설비(신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m ²)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Q1	Q1	-	17,999.0	Q1	-	증 17,999.0	17,999.0	2공구

【 가구 및 획지 계획도 】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A1	용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부대시설 포함)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치	-			
		외관	-			
		형태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A1 완충녹지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A1	도면표시		P1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부대시설 포함)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치	-			
		외관	-			
		형태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A1 완충녹지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1	B1	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공장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최저층수		-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활동집적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20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근린공원을 향하도록 권장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 단, 건축물 용도특성상 벽면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고 건물옥상은 옥상조경 실시를 권장 	
		형태와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사용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공공공지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2	B2	용 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5층
			최저층수	-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로 향하게 배치하도록 권장
		외 관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 폭 10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로 설치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건축물 외벽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3	B3	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중 이동관련시설
			불허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최저층수	-
		배치	•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외관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와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1	B1	도면표시	S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기목 및 리목,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공장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최저층수	-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활동집적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20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근린공원을 향하도록 권장	
		외관	•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 단, 건축물 용도특성상 벽면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넷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고 건물옥상은 옥상조경 실시를 권장	
		형태와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사용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공공공지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2	B2	도면표시	S2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최저층수	-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로 향하게 배치하도록 권장	
		외관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 폭 10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로 설치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와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건축물 외벽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3	B3	도면표시	S3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중 이동관련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최저층수	-
		배치	•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외관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와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다)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변경)

○ 생활대책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 C9	C1-1 ~ C9-3	용 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미술소 •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5층
			최저층수	-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로 향하게 배치하도록 권장
			외 관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 폭 10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에서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건축물 외벽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 C9	C1-1 ~ C9-3	도면표시	T1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5층
			최저층수	-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로 향하게 배치하도록 권장	
		외 관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 폭 10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건축물 외벽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이주자택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1 ~ D32	D1-1 ~ D32-12	용 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물연면적의 40%미만, 1층 이하에 한함)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3층
			최저층수	-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가급적 남향을 주로하여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외 관	•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지붕의 높이와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등)은 평균 1개 층고(4m) 이상 초과 금지 • 도시경관 제고를 위하여 경사지붕(구배 10분의 30이상 10분의 70이하) 설치 권장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와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 생울타리가 아닌 재료로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료, 색상 및 장식 등은 본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형태 와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1 ~ D32	D1-1 ~ D32-12	도면표시	T2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물면적의 40%미만, 1층 이하에 한함)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3층
			최저층수	-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가급적 남향을 주로하여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획지의 형태에 따라 주방향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계획	
		외 관	•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지붕의 높이와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등)은 평균 1개 층고(4m) 이상 초과 금지 • 도시경관 제고를 위하여 경사지붕(구배 10분의 30이상 10분의 70이하) 설치 권장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와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 생울타리가 아닌 재료로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료, 색상 및 장식 등은 본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형태 와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라) 주거 및 기숙사용지(변경)

○ 주거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1	E1	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 복리시설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8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9층
			최저층수	-
			배 치	• 인동간격 및 높이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각 단위주거에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 • 풍부한 녹지공간,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의 열린 시야 확보를 위해 고층탑상형 배치 권장 • 주거동과 주거동사이의 개방감과 기류의 흐름을 위해 8m이상 확보하도록 유도
			외 관	•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변화 권장 • 주거동의 지붕은 경사지붕(물매 1:30이상)을 권장함. 단,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조형적인 옥탑디자인을 하거나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와 탑상형인 경우에는 예외 • 옥탑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이나 동형 등으로 하여 건물의 상징성 강조 및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창출 • 계단실, 기계실 등의 옥탑층 높이는 평균 1개 층고(4m) 이하 설치를 권장 • 옥상에는 물탱크 및 기계실(엘리베이터 관련)등의 설치를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노출억제가 되도록 계획 • 부대복리시설 등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키고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주조색은高明도, 저채도의 색상으로 하되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순도 높은 색의 사용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으로 설정하고 2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주조색과 조화 도모 • 강조색은 건물의 활력과 상징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저명도, 고채도의 색 사용 • 시각적 초점이 될 수 있는 주거동 측면에 아산시 정체성과 단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2	E2	용 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 복리시설
			불허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0층
			최저층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동간격 및 높이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각 단위주거에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 • 풍부한 녹지공간,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의 열린 시야 확보를 위해 고층탑상형 주거동 배치 권장 • 주거동과 주거동사이의 개방감과 기류의 흐름을 위해 8m이상 확보하도록 유도
		외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변화 권장 • 주거동의 지붕은 경사지붕(물매 1:3이상)을 권장함. 단,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조형적인 옥탑디자인을 하거나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와 탑상형인 경우에는 예외 • 옥탑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하여 건물의 상징성 강조 및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창출 • 계단실, 기계실 등의 옥탑층 높이는 평균 1개 층고(4m) 이하 설치를 권장 • 옥상에는 물탱크 및 기계실(엘리베이터 관련)등의 설치를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노출억제가 되도록 계획 • 부대복리시설 등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키고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은高明도, 저채도의 색상으로 하되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순도 높은 색의 사용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으로 설정하고 2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주조색과 조화 도모 • 강조색은 건물의 활력과 상징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저명도, 고채도의 색 사용 • 시각적 초점이 될 수 있는 주거동의 측면에 아산시 정체성과 단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6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주거용도 외의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함)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1	E1	도면표시	R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 복리시설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문에 한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8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9층
			최저층수	-
		배 치	• 인동간격 및 높이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각 단위주거에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 • 풍부한 녹지공간,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의 열린 시야 확보를 위해 고층탑상형 배치 권장 • 주거동과 주거동사이의 개방감과 기류의 흐름을 위해 8m이상 확보하도록 유도	
		외 관	•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변화 권장 • 주거동의 지붕은 경사지붕(물매 1:30이상)을 권장함. 단,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조형적인 옥탑디자인을 하거나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와 탑상형인 경우에는 예외 • 옥탑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하여 건물의 상징성 강조 및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창출 • 계단실, 기계실 등의 옥탑층 높이는 평균 1개 층고(4m) 이하 설치를 권장 • 옥상에는 물탱크 및 기계실(엘리베이터 관련)등의 설치를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노출억제가 되도록 계획 • 부대복리시설 등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키고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주조색은高明도, 저채도의 색상으로 하되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순도 높은 색의 사용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으로 설정하고 2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주조색과 조화 도모 • 강조색은 건물의 활력과 상징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저명도, 고채도의 색 사용 • 시각적 초점이 될 수 있는 주거동 측면에 아산시 정체성과 단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6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주거용도 외의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함)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2	E2	도면표시	R2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 복리시설
			불허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0층
			최저층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동간격 및 높이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각 단위주거에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 • 풍부한 녹지공간,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의 열린 시야 확보를 위해 고층탑상형 주거동 배치 권장 • 주거동과 주거동사이의 개방감과 기류의 흐름을 위해 8m이상 확보하도록 유도 	
		외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변화 권장 • 주거동의 지붕은 경사지붕(물매 1:3이상)을 권장함. 단,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조형적인 옥탑디자인을 하거나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와 탑상형인 경우에는 예외 • 옥탑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이나 동형 등으로 하여 건물의 상징성 강조 및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창출 • 계단실, 기계실 등의 옥탑층 높이는 평균 1개 층고(4m) 이하 설치를 권장 • 옥상에는 물탱크 및 기계실(엘리베이터 관련)등의 설치를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노출억제가 되도록 계획 • 부대복리시설 등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키고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은高明도, 저채도의 색상으로 하되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순도 높은 색의 사용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으로 설정하고 2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주조색과 조화 도모 • 강조색은 건물의 활력과 상징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저명도, 고채도의 색 사용 • 시각적 초점이 될 수 있는 주거동의 측면에 아산시 정체성과 단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6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주거용도 외의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함)		

○ 기숙사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3	E3	용 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25% 이하
		높이	최고층수	• 20층
			최저층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동간격 및 높이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각 단위주거에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 •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는 개방감과 기류의 흐름을 위해 8m이상 확보하도록 유도
		외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변화 권장 • 지붕은 경사지붕(물매 1:30이상)을 권장함. 단,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조형적인 옥탑디자인을 하거나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와 탑상형인 경우에는 예외 • 옥탑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이나 동형 등으로 하여 건물의 상징성 강조 및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창출 • 계단실, 기계실 등의 옥탑층 높이는 평균 1개 층고(4m) 이하 설치를 권장 • 옥상에는 물탱크 및 기계실(엘리베이터 관련)등의 설치를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노출억제가 되도록 계획 • 부대복리시설 등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키고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은高明도, 저채도의 색상으로 하되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순도 높은 색의 사용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으로 설정하고 2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주조색과 조화 도모 • 강조색은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저명도, 고채도의 색 사용 • 시각적 초점이 될 수 있는 주거동 측면에 아산시 정체성과 단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6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주거용도 외의 시설은 적용하지 않음)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3	E3	도면표시	R3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25% 이하	
		높이	최고층수	• 20층
			최저층수	-
		배 치	• 인동간격 및 높이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각 단위주거에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 •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는 개방감과 기류의 흐름을 위해 8m이상 확보하도록 유도	
		외 관	•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변화 권장 • 지붕은 경사지붕(물매 1:30이상)을 권장함. 단,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조형적인 옥탑디자인을 하거나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와 탑상형인 경우에는 예외 • 옥탑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하여 건물의 상징성 강조 및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창출 • 계단실, 기계실 등의 옥탑층 높이는 평균 1개 층고(4m) 이하 설치를 권장 • 옥상에는 물탱크 및 기계실(엘리베이터 관련)등의 설치를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노출억제가 되도록 계획 • 부대복리시설 등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키고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활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주조색은高明도, 저채도의 색상으로 하되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순도 높은 색의 사용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으로 설정하고 2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주조색과 조화 도모 • 강조색은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저명도, 고채도의 색 사용 • 시각적 초점이 될 수 있는 주거동 측면에 아산시 정체성과 단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6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주거용도 외의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함)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 주차장(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F2	F2	용 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상 허용되는 주차장이외의 용도를 입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상위층으로부터 건축연면적의 30%내에 입지하는 것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층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F3	F3	용 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상 허용되는 주차장이외의 용도를 입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상위층으로부터 건축연면적의 30%내에 입지하는 것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F6	F6	용 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휴게소공중변소 및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F2	F2	도면표시		Z2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상 허용되는 주차장이외의 용도를 입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상위층으로부터 건축연면적의 30%내에 입지하는 것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층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F3	F3	도면표시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상 허용되는 주차장이외의 용도를 입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상위층으로부터 건축연면적의 30%내에 입지하는 것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F4 (신설)	F4	도면표시	Z2-1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상 허용되는 주차장 이외의 용도를 입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상위층으로부터 건축연면적의 30%내에 입지하는 것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시조례에 의거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 적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F6	F6	도면표시	Z1
				용 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 이외의 용도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에 허용되는 주차장 이외의 용도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시조례에 의거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 이하 				
용 적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학교(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2, G3	G2, G3	용 도	권장용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외 관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완충녹지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
G4	G4	용 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및 학원
			불허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5층
			최저층수	-
		배 치		•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외 관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5	G5	용 도	권장용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외 관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2, G3	G2, G3	도면표시		Z3
		용 도	허용용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외 관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완충녹지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4	G4	도면표시	Z4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중 이동관련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및 학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5층
			최저층수	-
		배 치	•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외 관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G5	G5	도면표시	Z3	
		용 도	허용용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외 관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 근린공공시설(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H1, H3 ~ H5	H1, H3 ~ H5	용 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사무소(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중대본부, 자율방범대 등 기타공공용도 포함), 소방파출소 및 그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H4에 적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H5에 적용하며 유치원 설치전 학교보건법에 의한 교육환경평가를 득할 경우에 한함)
			불허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5층
			최저층수	-
			배 치	-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고 건물옥상은 옥상조경 실시를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외벽면의 50%이상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사용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H1, H3 ~ H5	H1, H3 ~ H5	도면표시	Z5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사무소(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중대본부, 자율방범대 등 기타공공용도 포함), 소방피출소 및 그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H4에 적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H5에 적용하며 유치원 설치전 학교보건법에 의한 교육환경평가를 득할 경우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5층
			최저층수	-
		배 치	-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고 건물옥상은 옥상조경 실시를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외벽면의 50%이상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사용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종교시설(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2 ~ 13	12 ~ 13	용 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포함)
			불허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2 중로1-1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2 ~ 13	12 ~ 13	도면표시		Z6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2 중로1-1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		

○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K1	K1	용 도	권장용도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K1	K1	도면표시		Z8
		용 도	허용용도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		

○ 통신시설(폐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N1	N1	용 도	권장용도	• 통신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유수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01 ~ 04	01 ~ 04	용 도	권장용도	• 저류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건 폐 율		• 20% 이하
		용 적 륜		•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01 ~ 04	01 ~ 04	도면표시		Z11
		용 도	허용용도	• 저류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건 폐 율		• 20% 이하
		용 적 륜		•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전기공급설비(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1	P1	도면표시	Z12	
		용 도	허용용도	• 변전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		

○ 가스공급설비(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Q1	Q1	도면표시	Z13	
		용 도	허용용도	• 가스공급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B1	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도로의 교차로 각각부에서 80미터이내 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는 아산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형태 및 배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다만, 차량출입구 설치를 위한 구간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 가능 2. 공개공지의 바닥은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 설치 3. 공개공지 면적중 식재 및 시설물 설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 	전면도로 : 대로3-3
B2	B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각각부 및 도로굴절부에서 10미터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차량출입통로나 주차통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변경없음)

○ 생활대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C1 ~ C9	C1-1 ~ C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차량출입통로나 주차통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주자 택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D1 ~ D32	D1-1 ~ D3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차량출입통로나 주차통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주거 및 기숙사 용지(변경없음)

○ 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E1 ~ E2	E1 ~ E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에서 60미터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단지내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권장함 •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주택조례 제10조의 주차장 계획기준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설치계획 • 보행자동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동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동로가 차량동선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 권장 •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공개공지개념으로 확보하고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며, 건축한계선 가각의 길이는 10미터이상 확보함 - 주거동 각동은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 식재등 조경공간으로 활용 권장 - 단지 가각부의 공공조경공간 조성방식은 건축법과 아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등의 시설 설치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는 포장 및 시설의 설치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교목 및 하부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식재로 단지경계부의 녹지벨트 형성 유도 • 단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30%이상의 녹지를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재 등을 시행 - 건축물 1층에 세대가 있는 경우 세대 주개구부 전방에 발코니 외벽으로부터 폭 2.0미터 이상의 앞마당 설치 권장 -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권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행자동로변의 녹지는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2.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는 수관이 크고 기업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주변가로와 동일 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을 창출 3. 주거동 주변녹지는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4. 주차장 주변녹지는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녹음식재 - 단지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친환경적 투수포장으로 설치 권장 	

○ 기숙사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E3	E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각각부에서 60미터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단지내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권장함 •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하주차시설을 활성화하고, 가급적 설치대수의 40%이상을 지하주차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 • 보행자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통로가 차량동선 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하도록 권장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는 포장 및 시설의 설치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교목 및 하부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식재로 단지경계부의 녹지벨트 형성 유도 • 단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30%이상의 녹지를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을 시행 -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권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행자통로변의 녹지는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2.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는 수관이 크고 기업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주변가로와 동일 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을 창출 3. 주거동 주변녹지는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4. 주차장 주변녹지는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녹음식재 - 단지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친환경적 투수포장으로 설치 권장 	

라)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학교(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G2 ~ G3	G2 ~ G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각각부 및 도로 굴절부에서 10~60미터 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근린공공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H1, H4	H1, 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각각부 및 도로굴절부에서 10미터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4(면사무소)에 건축물 건축시 법정주차대수 외에 25대 이상을 추가적으로 확보 	

○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I2	I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각각부 및 도로굴절부에서 10~48미터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